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4) 재산분할청구사건 및 10)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은 성질상 재산권상의 소이므로,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유사하게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산정하되, 일부 감액하여 납부하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4) 재산분할청구사건 및 10)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를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함께 규정하도록 하고, 수수료 산정 및 상소 등의 수수료 배율을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유사하게 변경하되, 다류 가사소송 사건의 수수료는 1/2로 감액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 중 4)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구하고 그에 따라 산정한 인지액의 1/2로 하며, 10) 상속재산분할청구사건의 수수료는 ‘상속재산물건의 값 × 청

구인의 상속지분 비율 $\times 1/3$ 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여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산정한 인지액으로 규정함(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5조의2)

○ 신설된 제5조의2에 대하여도 전자소송의 특례가 적용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및 동 규칙을 준용하는 규정을 명문화 함(안 제9조)

4.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5.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및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을 각각 “제1항 규정액”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 또는 제4항”을 “제3항의”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마류 가사 비송사건의”를 “마류 가사비송사건(다만, 제5조의 2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문 안에서 같다)의”로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는 수개의 청구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다.

②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3조에 정한 수개의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산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사건에 관한 특칙 등) ① 다음 각 호

의 사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간의 병합청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문 안에서 같다)에 관하여,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하고,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부터 제6조,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인지액의 1/2로 하되,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때 제2호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은 “청구”로, “소의 제기”는 “심판 청구”로, “항소”는 “항고”로, “상고”는 “재항고”로, “반소”는 “반대청구”로, “재심청구”는 “준재심청구”로 본다.

1. 다류 가사소송사건

2. 마류사건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가사비송사건

② 마류사건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소송목적의 값은 “상속재산의 가액 × 청구인의 상속지분 비율 × 1/3”으로 산정하고,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부터 제6조, 제8조에서 산정한 인지액으로 한다. 이 때 “소송”은 “청구”로, “소의 제기”는 “심판 청구”로, “항소”는 “항고”로, “상고”는 “재항고”로, “반소”는 “반대청구”로, “재심청구”는 “준재심청구”로 본다.

③ 법 제14조제1항 또는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류사건 또는 마류 사건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10)의 가사사건을 병합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는 제1항, 제2항과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각 산정된 수수료를 비교하여 그 중 다액에 의한다.

제8조제2항 중 “제5조”를 “제5조, 제5조의2”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①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1건당 20,000원으로 한다. ②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의 수수료는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항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의 1.5배액으로 하고, 상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2배액으로 한다. ④ 제1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액으로 하고,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의 수수료는 그 1.5배액으로 한다. ⑤ 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액으로 한다.	제2조(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② ----- -----제1항----- ----- ----- -----. ③ ----- -----제1항----- ----- ----- -----. ④ 재심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액으로 한다.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① -----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 마류 가사 비송사건의 심판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으로 한다.

② 항고 제기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 제1항 규정액의 배액으로 하고, 재항고제기의 수수료는 그 3배액으로 한다.

③ 반대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10,000원으로 한다. 다만, 본래의 청구와 그 목적이 동일한 반대청구에는 수수료를 요하지 아니한다.

④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수수료는 사건의 종류 및 심급에 따라 제1항, 제2항 또는 제3항 규정액으로 한다.

제5조(병합청구의 수수료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소송청구 또는 가사소송청구와 가사비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 중 다액인 수수료

----가사비송사건(다만, 제5조의2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문 안에서 같다)의-----.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병합사건의 수수료 등) ① -----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수개의-----
-----경우 수수료는 수개의 청구중 다액인 수수료에 의한

에 의한다.

②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개의 가사비
송청구를 병합청구하는 경우에
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료를 합
산한다.

③ 가사비송청구의 개수를 정하
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
목 내의 각 번호를 달리하는
청구는 수개의 청구로 본다.

2. 라류 가사비송청구 중 법 제
2조제1항제2호가목의 1)부터
6), 8)부터 9), 11)부터 24)의8은
사건본인마다, 31), 33)부터 38)
은 피상속인마다, 30)은 기간연
장의 대상이 되는 상속인마다,
32), 39)는 청구인마다, 40)은
검인의 대상이 되는 구수증서
마다, 41)은 검인의 대상이 되
는 유언서·녹음대마다, 42)는
봉인된 유언서마다, 43)부터
47)은 유언집행자마다, 48)은
부담 있는 유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다.

② 「가사소송규칙」-----
-----제3조에서 정한 수개의
-----경우
수수료는 수개의 청구의 수수
료를 합산한다.

③ (현행와 같음)

3. 마류 가사비송청구 중 법 제 2조제1항제2호나목의 3), 5), 6), 7)은 사건본인마다, 8)은 부양권리자마다, 9)는 청구인마다 각 1개의 청구로 본다. 다만, 7)의 청구 중 부모 쌍방에 대한 청구는 2건으로 본다.

<신 설>

제5조의2(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가사사건에 관한 특칙) ① 다음 각 호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다음 각 호의 사건들이 병합된 경우에는 병합된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금액을 소송목적의 값으로 한다)하고,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부터 제6조,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인지액의 1/2로 하되,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때 제2

호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은 “청구”로, “소의 제기”는 “심판 청구”로, “항소”는 “항고”로, “상고”는 “재항고”로, “반소”는 “반대청구”로, “재심청구”는 “준재심청구”로 본다.

1. 다류 가사소송사건

2. 마류사건 중 법 제2조제1항 제2호나목 4) 가사비송사건

② 마류사건 중 법 제2조제1항 제2호나목 10)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소송목적의 값은 “상속 재산의 가액 × 청구인의 상속 지분 비율 × 1/3”으로 산정하고, 수수료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제3조부터 제6조, 제8조에서 산정한 인지액으로 한다. 이 때 “소송”은 “청구”로, “소의 제기”는 “심판 청구”로, “항소”는 “항고”로, “상고”는 “재항고”로,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사용자로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동의한 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및 재심소장에는 제2조에 따른 수수료의 10분의 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반소”는 “반대청구”로, “재심 청구”는 “준재심청구”로 본다.

③ 법 제14조제1항 또는 「가사소송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류 사건 또는 마류 사건 중 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4), 10)의 가사사건과 제2조, 제3조에서 정한 가사사건을 병합청구하는 경우 수수료는 제1항, 제2항과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여 각 산정된 수수료를 비교하여 그 중 다액에 의한다.

제8조(전자소송에서의 특례)

-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은 제3조, 제5조 및 제6조의 경우에 준용한다.

<신 설>

②-----제5조, 제5조의2-----.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따
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
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
는 범위 내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을 준용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1609